



보도	2024.8.21.(수) 10:00	배포	2024.8.20.(화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서재완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이동규	(02-3145-7570)
담당부서	법무실	책임자	국 장	정은정	(02-3145-5910)
	금융투자팀	담당자	팀 장	김인식	(02-3145-5920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「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」개최

간담회 개요

- 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8.21.(수) 국내의 저명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 - o 이번 간담회는 **자본시장 선진화** 방안으로 논의 중인 **이사의 충실** 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,
 - 향후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였음

학계 간담회 개요

□ 일 시: '24.8.21.(수) 10:00~11:20

□ 장 소 : 금융감독원

□ 참석자 : 금융감독원장

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

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(5인)

- ◈ (주주 충실의무)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, '주주 충실의무'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
- ◈ (이사 책임 제한)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
- ◈ (기 타)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층 발생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
- □ (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)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는 당연함에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음
 - 한편, 회사와 이사 간 위임의 법리 등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
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
- □ (이사의 책임 제한 관련) 주주 충실의무 도입시 예상되는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(배임죄 폐지 등)과 관련하여
 - 배임죄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,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민사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음
- □ (기타 대안)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
 - ^①이사의 충실의무(상법 제382조의3)와는 **별도의 조문**을 통해 이사의 '주주 이익 보호의무'를 규정하는 방안, ^②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과
 - ③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유지(留止)청구권*・합병검사인**
 제도 도입, ^④지배주주의 사익추구시(소수주주 이익 침해등) 부당결의 취소의 소(상법 제381조) 제기 허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됨
 - * 일본 회사법(會社法)은 불공정한 합병 등 조직재편시 주주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합병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(제796조의2)
 - ** 독일 조직재편법(Umwandlungsgesetz)은 합병비율 공정성 담보 수단으로서 합병회사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의해 합병검사를 받도록 규정(제9장, 제10장)

3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 의무 대상인 "회사"에 주주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,
 -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,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데 안타까움을 표명함
 - 또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^{*} 및 국내증시의 **투자자보호**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
 - *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,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,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
 -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(Principle-based)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,
 -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였음
- □ 아울러, 이복현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기는 하나,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면서
 -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,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